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채권추심자의 금지행위 추가〉

■ 이상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869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세 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IV. 관계기관의 의견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상회의원 등 11명
2. 제 안 일 : 2025. 7. 31.
3. 회 부 일 : 2025. 8.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반복적 전화 또는 방문, 허위사실 유포, 공포심 유발, 정당한 사유 없는 야간 또는 심야 추심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불법사채업자나 일부 대부업체들이 채무자에게 대출을 제공하면서 ‘비상연락망 확보’ 또는 ‘연대보증인 확인’ 등의 명목으로 지인, 가족, 직장동료 등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은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심지어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채권추심의 수단으로서 제3자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이 부재함.

이에 채권추심자가 비상연락망, 연대보증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용해 채무사실을 고지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제재근거를 제15조에 반영함으로써, 채무자 외 제3자에 대한 불법추심을 예방하고 채권추심 과정의 인권보장 및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채권추심자가 비상연락망 확보, 연대보증인 확인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의 관계인¹⁾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관계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채무자의 지인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생략)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의 관계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비상연락망, 연대보증 또는 기타 명목으로 요구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라 취득한 채무자의 관계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3. 채무자의 관계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 ----- -----.

1. ~ 4. (생략) 5. 업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u>제9조제7호</u>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15조(벌칙) ① <u>제9조제1호</u>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u>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u>를 위반한 자 3. 4. (생략) ③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 ----- -----<u>제9조제1항제7호</u> ----- 제15조(벌칙) ① <u>제9조제1항제1호</u>----- ----- ----- ----- ----- -----. ② ----- ----- -----. 1. (현행과 같음) 2. <u>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u> <u>및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u> ----- 3.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체결되는 채권추심 계약부터 적용한다.	

-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은 ①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②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③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채무자와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안 제9조제2항제1호는 관계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채무자의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서 제외²⁾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관계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대출계약이 이루어지는 때에 발생하므로, 대출계약 이후의 채권추심 행위를 규율하는 채권추심법에서 개인정보 요구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음.³⁾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벌칙)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3) 금융위원회 의견

다음으로, 안 제9조제2항제2호는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8조의3제2항, 제9조 각 호 및 제12조제5호에서 이미 관계인에게 채무사실 및 채무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또는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그 구성요건이 상당 부분 중첩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9조제2항제2호와 구성요건이 유사한 규정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생략) ② 채권추심자는 <u>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u>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u>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u>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u> 5. <u>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u>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u>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u>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u>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u>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5. <u>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제9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u>

또한, 안 제2항제3호는 관계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10조에서 이미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⁴⁾

안 제9조제2항제3호와 구성요건이 유사한 규정
제10조(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한편, 안 제9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현행법 제9조 각 호(안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폭행·협박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현행법 제9조 각 호(개정안 제9조제1항 각 호)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사실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추심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안 제9조제2항제2호는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라고 하여 처벌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함.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어느 정도의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는 범죄의 죄질, 보호법익과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형벌은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비례성을 갖추어야 하고,⁵⁾ 죄질과 보호법익 등이 유사한 범죄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비슷한 법정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⁶⁾

<제9조 위반행위 관련>

의무규정	위반 내용
제1항제4호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u>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u>
제1항제5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u>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u>
제1항제6호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u>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u>
제1항제7호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u>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u>
제2항제2호	<u>취득한 채무자의 관계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u>

그 밖에 체계·자구 검토 사항으로, 안 제9조제2항 각 호에서 “관계인”을 “채무자의 관계인”으로 인용하는데, 제2조제3호는 관계인을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로 정의⁷⁾하는바 “관계인”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5) 헌법재판소 2017. 12. 28. 2016헌바368 등

6) 헌법재판소 2011. 11. 24. 2010헌가42 등

7)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Ⅲ. 관계기관 의견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채무자의 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을, 지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9조제6호를, 채무자의 관계인에 대한 개인정보 누설은 같은 법 제10조제1항을 각각 위반한 행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인바 형사처벌 규정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음.

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안 제9조제2항 제3호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⁸⁾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054

8)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⑤ (생략)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